

「평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08월 23일 남진삼 의원이 발의하고, 2022년 09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 책임이 있는 바, 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·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3조)
- 나.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(안 제4조)
- 다.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 의무(안 제6조)
- 마. 관련 교육 및 홍보 (안 제7조 ~ 8조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우리 군의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
피해장애인을 보호·지원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며,

○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‘2020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’에 따르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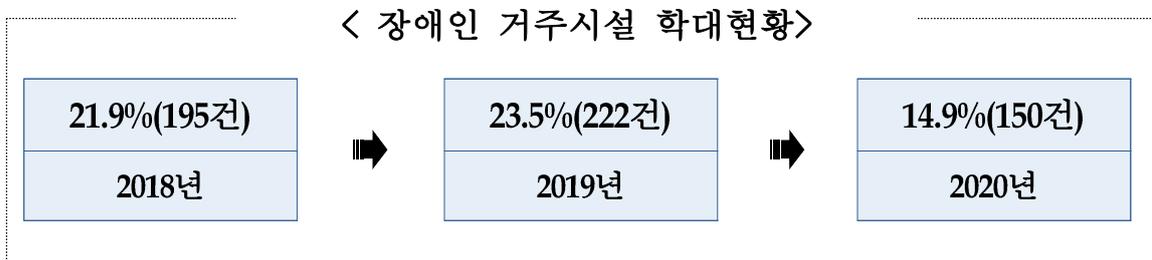
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의 1순위는 일반가정(39.1%),

2순위는 장애인거주시설(14.9%)로 조사되었고

학대 행위자의 26.4%는 기관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전체 장애인 학대 사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
‘18년 21%, ’19년 23%, ‘20년 14%로 확인됩니다.

(‘20년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사건이 전년에 비해 32.4%
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 출입이
제한되고 시설이 일시적으로 폐쇄된 영향으로 추측)



출처 : 2020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

○ 또한, 인권위는 '21년 상·하반기 지적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로 과밀수용, 건강권 보호 미흡 등 법·제도 개선을 권고하였고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에 따라 지자체는 장애인 보호 및 복지향상 책임이 있으므로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불법시설 신고, 피해장애인 보호 노력 등을 의무화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.

○ 입법례를 보면 전국적으로 8개 지자체, 도내에서는 3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(속초, 태백, 양양)

○ 검토결과,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4. 참고자료(관계법령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